# 휴대폰보험

(메리츠일반-특종/기타/기타A-6-2301A)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있습니다.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 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 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 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 마. 그 밖에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입니다.

#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제외)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 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⑧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고객정보의 송·수 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 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화재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증권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대체투자운용	고객정보관리인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개인신용정보는 반드시 고객님의 동의를 얻은 후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제공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활용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 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이용·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 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 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 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 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신청자 제한 : 마케팅 목적의 이용·제공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하며, 단, 보험계약 체결· 유지·관리 이행을 위한 동의는 체결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동의사항으로 사안에 따라 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 전화 : 02-2122-4000, 홈페이지 : http://www.nice.co.kr

• SCI평가정보(주)

- 전화 : 02-3445-5000, 홈페이지 : http://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전화: 02-708-6000, 홈페이지: http://www.kcb4u.com

바. 본인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제38조의3에 따라 보험거래종료 후 5년 경과한 경우 본인정보를 삭제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거래종료일은 1)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 본인인증센터 > 개인정보보호 > 개인신용정보관리

## 3. 본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 당사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 02-3786-2513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 02-3702-8500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15,16층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 금융민원센터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안내말씀

계약자께서는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시고 약관내용을 꼭 읽어 보셔서 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행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 모집질서 확립 경구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센터안내 문구 ◈

■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전화: 3786-7536, 팩스: 3786-7547, 인터넷 www.fss.or.kr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계약, 보상 관련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메리츠화재 민원상담 02)6464-3522/3535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 전자민원신청

# 가입자 유의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따릅니다.

#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일반적인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따릅니다.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 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 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3.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5. 계약의 무효(재물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약 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 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 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및 용도를 변경하여 위험이 변경된 경우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9.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보장 관련)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하여 드립니다.

# 10. 보험금의 지급절차(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 관련)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주요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험연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 목 차 -

휴대폰보험 보통약관	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4
제6조(보험금의 청구)	4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4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5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5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2조(현물보상)	
제13조(잔존물)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6조2(양도)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9조(청약의 철회)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3조(조사)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27조[모임묘의 답답이 전체되는 경우 답답되고(녹녹)와 계약의 해지]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8조[모임됴의 답답을 전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투활(요약외속)] 제29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29조[경제업행 등의 철자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월구월(요약외속)]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	
	10

제31조(종대사유로 인한 해지) 14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5 제35조(관람법원) 15 제35조(관람법원) 15 제36조(소멸시호) 15 제36조(소멸시호) 15 제36조(산멸시호) 15 제36조(산면시호) 16 제38조(설면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8조(설면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순해배상책임) 16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5보 특별약관 18 YR기기 담보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대통신사 포괄계약 축가특별약관 20 대통신사 포괄계약 축가특별약관 22 대통신사 포괄계약 폭발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2 대통신사 포괄계약 폭발약관 23 대화원한 부담보 특별약관 23 대화원한 부담보 특별약관 31 대화원한 부담보 특별약관 31 대화원한 부담보 특별약관 31 대화원한 무담보 특별약관 31 대화원 두담보 특별약관 32 달로신차 모괄계약 특별약관 33 단체계약 보험기관 설정 주가특별약관 44 단체계약 보험기관 설정 주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관 설정 주가특별약관 44 주대체약 보험관관 44 주대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14
제33조(보험료의 환급) 1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5  제34조(본쟁의 조정) 15  제35조(관합법원) 15  제36조(소면시호) 15  제36조(소면시호) 16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6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1조(조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2  미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2  미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2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6  교통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Ⅱ)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Ⅱ) 36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리가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되가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4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4
제7관 본쟁의 조정 등 15   제34조(분쟁의 조정) 15   제35조(관합법원) 15   제36조(소멸시효) 15   제37조(약관의 해석) 16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7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제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주대폰보험 특별약관 18   오나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9   암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주가특별약관 22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적 특별약관 28   과순 부보장 특별약관 29   관율 특별약관 30   전부순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공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Ⅱ) 35   보험료분남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남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주가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주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주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주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주가특별약관 44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즉부플약관 44   전에인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4
제34조(분쟁의 조정) 15 제35조(관합법원) 15 제36조(스멀시효) 15 제37조(약관의 해석) 16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지대본보험 특별약관 18 VR기기 담보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28 파순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라 한보장 특별약관 41 라 한보장 51 라	제33조(보험료의 환급)	15
제35조(관합법원) 15 제36조(소멸시효) 15 제37조(약관의 해석) 16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만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6 제40조(개인정보보효) 17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휴대폰보형 특별약관 18 도난분실 부모장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5 대위권모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비)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40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4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5
제36조(소멸시효) 15 제37조(약관의 해석) 16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산책임) 16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에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에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에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측가특별약관 22 지장보기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30 전부순해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순해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순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비)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이진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트럼로정산 주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주가특별약관 42	제34조(분쟁의 조정)	15
제37조(약관의 해석) 16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6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8 VR기기 당보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2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32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33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33 대위권보장 특별약관 34 지자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33 그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3 그 건물용 피보정휴대폰 특별약관 33 T - 엔탈용 피보정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Ⅱ)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44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4	제35조(관할법원)	15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7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휴대폰보험 특별약관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4 다체계약 특별약관 44 단체계약 보험되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4 단체계약 보험되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4 #</td <td>제36조(소멸시효)</td> <td> 15</td>	제36조(소멸시효)	15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6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b>휴대폰보험 특별약관</b>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8 VR기기 담보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Ⅱ)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Ⅱ) 35	제37조(약관의 해석)	16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b>휴대폰보험 특별약관</b>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8 VR기기 담보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몰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6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6 단체계약 특별약관 37 단체계약 특별약관 38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1 <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부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 부표> 48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6
제41조(준거법)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17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8 18 도난분설 투별약관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리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4 44 <부포> 48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6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b>휴대폰보험 특별약관</b>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폭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4 인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4 단체계약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제40조(개인정보보호)	17
휴대폰보형 특별약관       1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슨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투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로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되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제41조(준거법)	17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19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Ⅱ)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되장산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7
VR기기 담보 특별약관 20 보통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부표> 48	휴대폰보험 특별약관	18
VR기기 담보 특별약관 20 보통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2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부표> 48	도난·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	18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20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4 기관로운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되건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되건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4 #</td <td></td> <td></td>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21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트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리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I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귀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부표>       48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6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Ⅱ)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리장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리장 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부표>       48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8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공동인수 특별약관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I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복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부표>       48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리장산 추가특별약관 4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td <td></td> <td></td>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29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되건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td <td></td> <td></td>		
환율 특별약관 30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1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2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32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3 모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33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Ⅱ)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3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33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3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II)       35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39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단체계약 특별약관       40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부표>       48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2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43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4         <부표>       48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부표>48		
법률조문 해설	법률조문 해설 ···································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		

# 휴대폰보험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의 범위
- (1)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 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이하 "피보험휴대폰"이라 합니다.) 를 말합니다.
- (2) 아래의 물건은 피보험휴대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1) 밀수품 또는 불법적인 운송 또는 거래과정에 있는 제품
  - 2)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복구나 교체비용, 기본사양이 아닌 프로그램
  - 3) 장착·부착 영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용으로 장착된 장비, 제조시 제품에 장착되 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 4) 보호용덮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제품 본체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충전기나 USB케이블
  - 5) 수리, 교체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지정서비스 센터"또는 "지정서비스 센터"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물건
  - 6)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통신요금 및 기타서비스 요금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가액: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으로서 보험증권에 정한 협정가액(사고시점의 출고 가)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보상시점의 출고가)을 초과할 때에는 그 보상시점의 출고가를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5. 기타 관련 용어
  - 가. 지정서비스센터: 회사를 위해 피보험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나. 이동통신회사: 무선전화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전부손해: 피보험휴대폰이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휴대폰에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보험기간 중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인 경우 포함)를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폰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피보험휴대폰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④ 자기부담금은 위 제3항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소해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범람, 태풍, 풍수재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제품의 소각, 몰수, 압류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7. 지연, 사용손실 : 지연(회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한합니다.), 사용손실,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 여기에는 시간손실, 이익상실, 피보험 휴대폰의 수리 또는 대체의 지연 또는 이로 인한 불편 등을 포함합니다.
- 8. 진부화 : 진부화 또는 감가상각
- 9. 마모. 성능저하. 잠재적인 결함
  - (1) 마모나 성능의 저하
  - (2) 피보험휴대폰의 손상을 초래한 숨겨지거나 잠재된 결함(설계결함을 포함합니다.)이나 품질불량
- 10. 전기적, 기계적 손해 : 배터리 전원이나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전기적·기계적 손 상이나 장해
- 11. 프로그램, 수리작업 : 프로그래밍, 청소, 조정, 수리, 변경 또는 피보험휴대폰에 행해진 기타 작업
- 12. 바이러스 :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명령으로
  - (1) 피보험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 (2) 피보험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기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 13.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 부정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휴대폰을 위탁 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 14. 결과적 손실 : 사용중지로 인한 수익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간접손해
- 15. 다른 USIM : 최초 가입 당시의 USIM이 아닌 타인명의 USIM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 16. 그 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휴대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외관상 손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 (2)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 17.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수리, 교환이 가능한 경우
- 18. 수리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증명될 수 없는 손해
- 19.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 20.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21.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
- 22. 지정서비스업체나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

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피보험휴대폰에 사고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 또는 "지정서비스센터"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피보험휴대폰에 관한 사항
  - 2.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경위
- ②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 회사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도난/분실사실 확인서"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반드시 "지정서비스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손상 피보험휴대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지정서비스센터"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파손(침수, 화재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지정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실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다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2. 도난, 분실 등 전부손해로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교체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파손사고로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 보다 높은 경우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 (리퍼비쉬 제품을 포함합니다.)하거나, 원제조사 이외의 유사제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 다

##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정한 보상횟수 제한, 사고당 보상한도 또는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1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손해방지의무)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제12조(현물보상)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현물을 보상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잔존물)

- ① 회사가 피보험휴대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②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지정서비스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의 반납을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은 "지정서비스센터"가 부담합니다. 다만, 손상된 피보험휴대폰이 회사가 피보험휴대폰을 교체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반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잔존물 미회수 부담금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 ③ 분실 또는 도난당한 피보험휴대폰이 회수되는 경우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제1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 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 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

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3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 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 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29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30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3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4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 습니다.

####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 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0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 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 호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습니다.)

# 휴대폰보험 특별약관

# 도난 분실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휴대폰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VR기기 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라'목 '(2)' '3)'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시점에 통보된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VR기기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용어의 정의

VR기기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체험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임대폰 보상 특별약관

#### 제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난, 분실 등 전부손해로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는 경우에 피보험휴대폰과 동일한 시리즈의 직전 출시 모델의 임대폰(중고폰)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폰 재고에 따라 동종·동 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보상하거나, 원제조사 이외의 유사제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임대기간 종료(임대기간 종료전을 포함합니다.)후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임대폰을 반납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임대기간이란 도난, 분실 등 전부손해로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여 임대폰(중고 폰)을 보상받은 시점부터 반납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임대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③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임대폰(중고폰)을 보상받은 시점부터 1년을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제2조(준용규정)

#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부품교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제품이 보험증권의 보장기간동안 보험증권에 명기되어있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보장대상 부품의 성능저하, 도난,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교체 또는 구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험증권의 보상한도액 및 보상횟수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교체 또는 구매 시 발생하는 모든 배송비 및 교통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고장이나, 손상,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회원의 서비스 요청이 해지, 철회 등 서비스기간 종료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 2. 수리비용 영수증과 수리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및 기재된 문구가 변경되거나 첨가된 경우
- 3. 제조사의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부위와 관련된 해당 제품의 수리
- 4.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 지정 수리 업체. 계약자가 인가한 수리업체 외의 기타수리업체에서 교체 또는 구매하여 발생한 비용
- 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비용 손해

#### 제3조(준용규정)

#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합니다.

#### ※ 용어의 정의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기간(포괄계약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휴대폰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자나 피보험휴대폰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없이 각각의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휴대폰 정보, 휴대폰 개통일, 부가서비스 가입일(휴대폰의 도난, 분실, 파손 관련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개시일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다음에 따라 정산합니다.
  -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년간의 평균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나,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자는 위 제2호의 자료에 의하여 정산기간 마다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 라 하며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월 단위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합니다.)를 보험 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휴대폰의 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보험료는 일 단위로 계산 합니다. 다만, 전부손해(도난, 분실 등)가 발생한 사고일과 보상기변일(계약자의 부가

서비스 해지일을 말합니다.)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기변일을 종료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6. 보통약관 제19조(청약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 또는 부가서비스가입을 철회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그 피보험휴대폰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종료시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의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가.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 합과 예치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로부터 받습니다.
  - 나.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 합과 정산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정산 및 예치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

- ① 회사는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각각 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②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담보는 제1항에 따른 개시일【부가서비스 가입자로 등록된 날의익일 (00)시(다만, 부가서비스 가입 이후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또는 포괄계약 개시 이전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제1항에 따른 보상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날과 부가서비스 최초 가입일로부터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계속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이 해지(부가서비스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된 경우에는 그 해지 등록 시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 ③ 회사는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의 보험료 정산절차시까지 계약자로부터 개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또는 휴대폰인증 동의, 전화녹취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 제4조(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개별 피보험자와의 이 동통신서비스계약(부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해지에 따른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고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총보상한도의 설정)

- ① 회사는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에게 월별 손해율 데이터 제공 및 손해율 추이 보고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제1항에서 정한 총보상한도를 초과하기 전 또는 초과한 후에는 회사와 계약자는 손해율 또는 손해액을 경감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제6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 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준용규정)

#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이동통신서비스 중 T 아이폰케어서비스에 가입한 자로 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합니다.

####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회사는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제2항 제5호의 아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도난, 분실 등)가 발생한 사고일과 보상기변일(계약자의 부가서비스 해지일을 말합니다.)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기변일을 종료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정산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아 래 -

#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 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 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 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휴대폰의 파손(화재, 침수를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 환율 특별약관

#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날의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⑤ 보험금 : 지급일

#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부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휴대폰에 발생한 손해가 전부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제1항 2호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리퍼 수리 부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피보험휴대폰을 수리하지 않고,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리퍼비쉬 제품을 포함)한 경우에 발생하는 교체비용

####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물류 및 배송비용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도난, 분실 등 전부손해로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수리불가 경우에는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하는데 발생된 물류 및 배송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물류 및 배송비용】지정서비스센터가 교체단말기를 확보, 보관, 피보험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리불가】기술적인 사유로 인한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추정수리비가 사고시점 동일 제품의 구입가격보다 커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배송한 교체단말기 수령을 지체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제4조(현물보상)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서비스센터"가 피보험자에게 현물을 보상한 경우, "지정서비스센터"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 T-렌탈용 피보험휴대폰 특별약관

#### 제1조(용어의 정의)

- ①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기관)을 말합니다. 'T-렌탈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는 소유자와 사용자 또는 관리자 가 공동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라목 (1)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T- 렌탈 서비스'와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동통신단말기("피보험휴대폰")를 말합니다.

#### ※ 용어 정의

T-렌탈 서비스 :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이용약정을 위해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을 한 가입자가 SK텔레콤과 피보험휴대폰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를 뜻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T-렌탈 서비스'에 가입한 기간 동안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으나, 복수의 공동피보험자가 있고 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자에게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증서가 없는 경우. 단, 보험금청구를 양도한다는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어느 한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는 다른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사유로 적용됩니다.

#### 제3조(피보험자 상호간의 관계)

어느 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면책, 통지의무 위반, 사기에 의한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피보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4조(효력의 상실)

'T-렌탈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본 특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합니다.

#### ※ 용어의 정의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기간(포괄계약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휴대폰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자나 피보험휴대폰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 없이 각각의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휴대폰 정보, 휴대폰 개통일, 부가서비스 가입일(휴대폰의 도난, 분실, 파손 관련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개시일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다음에 따라 정산합니다.
  -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년간의 평균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나,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자는 위 제2호의 자료에 의하여 정산기간 마다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 라 하며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월 단위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합니다.)를 보험 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휴대폰의 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보험료는 일 단위로 계산 합니다. 다만, 전부손해(도난, 분실 등)가 발생한 사고일과 보상기변일(부가서비스 가 입자의 부가서비스 해지일을 말합니다.)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기변일을 종료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6. 보통약관 제19조(청약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험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 또는 부가서비스가입을 철회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그 피보험휴대폰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종료시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의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가.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 합과 예치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로부터 받습니다.
  - 나.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 합과 정산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에 그 금액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정산 및 예치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용어의 정의

부가서비스 가입자 : 피보험자 중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의 도난, 분실, 파손과 관련한 서비스를 가입한 자

#### 제3조(개별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기간)

- ① 회사는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각각 의 부가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② 개별 부가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담보는 제1항에 따른 개시일【부가서비스 가입자로 등록된 날의 익일 (00)시(다만, 부가서비스 가입 이후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 인증이 없는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또는 포괄계약 개시 이전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 제1항에 따른 보상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날과 부가서비스 최초 가입일로부터 ()개월('T-렌탈 서비스'연장시 ()개월)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이 해지(부가서비스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합니다.)된 경우에는 그 해지 등록 시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 ③ 회사는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 정산)의 보험료 정산절차시까지 계약자로부터 개별 부가 서비스 가입자의 자필서명(또는 휴대폰인증 동의, 전화녹취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 제4조(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한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개별 부가서비스 가입 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부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해지에 따른 개별 피보험휴대폰 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가서비스 가입자

의 고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총보상한도의 설정)

- ① 회사는 제3조(개별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경우에 그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에게 월별 손해율 데이터 제공 및 손해율 추이 보고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제1항에서 정한 총보상한도를 초과하기 전 또는 초과한 후에는 회사와 계약자는 손해율 또는 손해액을 경감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제6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 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준용규정)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 제2조(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회 분납: 제 1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해당액)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 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T 아이폰케어서비스 용)

####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 제2조(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회 분납: 제 1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제(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 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를 보상한 후에도 보험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단체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 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 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자가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들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 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 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 및 보통약관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보상합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 의 대상이 되는 보험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 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 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 에 장애인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 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 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 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 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장

애인 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例入】】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 ~ 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 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 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의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보통약관 제7조 제2항)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법률조문 해설

법률조문	용어 해설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ol> <li>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li> <li>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li> </ol>
[민법 제2조(신의 성실) 제1항]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777조(친 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법률조문	용어 해설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 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
	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
	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
	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
	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
	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
	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
	로푸르 이전이전시 크피 전원전 개원전등증도를 제공이는 중 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
	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

법률조문	용어 해설
	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 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 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 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 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 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 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 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①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법률조문	용어 해설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 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3조(개인신 용정보의 이용)]	<ul> <li>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li> <li>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li> <li>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li> <li>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li> <li>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li>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li> </ul>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

법률조문	용어 해설
공·활용에 대한 동 의)]	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물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랑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특성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내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다. 신용정보제공·인용자나, 개인사용자회사, 개인사업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리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특성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로는 제 기안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리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급증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급증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급증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

법률조문 용어 해설 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 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 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 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필수적 동 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 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 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 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 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 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 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 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 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법률조문	용어 해설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
	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
	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
	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
	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
	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
	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
	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
	·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
	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
	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
	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는 가

법률조문	용어 해설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①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 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 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
	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 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 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 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 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13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제6항제 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ul> <li>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수 있다.</li> <li>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li> <li>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ul>

법률조문	용어 해설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
	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수 있다.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법률조문	용어 해설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
	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   
 	해는 개인정보의 수업·이용 즉즉, 수업·이용하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
제22조(동의를 받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는 방법)]	한다.
	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
	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

법률조문	용어 해설
	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
	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하다.
제23조(민감정보의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처리 제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
	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
제24조(고유식별정	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보의 처리 제한)]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법률조문	용어 해설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
	용하는 경우
	② 삭제
	○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
	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
보상과 보험가입에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 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3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보상과 보험가입에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
제4포(ㅋ푸단콜기	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
	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

법률조문	용어 해설
	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
	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
	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
	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
	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
	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
	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
	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법률조문	용어 해설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
	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
	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
	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
	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
	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
	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
	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
	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제1하제12층 및 제14층에 따르 건물이 추스 게사바버의 「건축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

법률조문	용어 해설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
	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
	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화재로 인한 재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보상과 보험가입에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한 법률 제4조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떠드더.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화재로 인한 재해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보상과 보험가입에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
(보험금액)]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
	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경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
[화재로 인한 재해	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상과 보험가입에	는 2천만원으로 한다.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제5조(보험금액)]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

법률조문	용어 해설
	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
	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
	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
	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
	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
[화재로 인한 재해보	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상과 보험가입에 관	한다.
한 법률 시행규칙 제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
2조(손해액)]	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
	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
	간 중 그 손실액

법률조문	용어 해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 지 급)]	<ol> <li>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li> <li>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li> <li>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li> <li>청구액과 지급액</li> <li>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li> </ol>
[상법 제657조(보 험사고발생의 통지 의무)] [상법 제732조(15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상법 제735조의3 (단체보험)]	<ul> <li>전체가 규칙에 따라 구성권의 친구 오는 필구를 피모함자도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li> <li>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li> <li>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li> </ul>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제2 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법률조문	용어 해설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
	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
	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
	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에 관한 규정 제3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
조(대체공휴일)] 	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
	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
[장기등 이식에 관	다)ㆍ골수ㆍ안구
한 법률 제4조(정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의)	·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
	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
	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조문	용어 해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
	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
	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
	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가족"또는"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장기등 이식에 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
한 법률 제42조(장	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 등)]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 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교의자·인의자·조선자 및 건호자들 할인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의료법 제2조(의 료인)]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 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연의사는 현당 의료과 현당 모신지모들 남구도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4. 오랜지는 오랜(助座)파 급연구 및 선생대에 대인 오건파 양오

법률조문	용어 해설
	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
	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
	무보조에 대한 지도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 제3조(의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료기관)]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법 시행규칙 제47	같다.

법률조문	용어 해설
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
	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
	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 1. 공통 및 상해 보험

#### 1) 알릴의무 위반 관련

사례 1.

S씨는 가입전부터 질병이 있었으나 몇년 동안 보상 청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권유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후 보상시 불이익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계약전 알랠의무는 상법 제 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 반드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야만 합니다.



사례 2.

P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상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기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 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만단으로 누락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2) 자필서명 미이행 관련

사례 3.

A씨는 지인인 B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권하였으나 남편 설득이 여의치 않자 A씨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필하여 보험가입하였고 추후 보상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불만 제기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3) 계약유지 관련

사례 4.

K씨는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사에 통지하였으나 직업의 위험도가 변경되어 현재 계약의 보험료 및 담보가 변경됨을 안내받고 불만 제기



유<u>의</u>하세요~!

표준약관(상해보험 개약 후 알릴 의무)에 근거하여 직업 급수(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 가입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배상

#### 1) 일상(가족, 자녀) 생활중 배상책임 관련

사례 5.

피보험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중 차량문을 열고 내리던 중 옆차량을 파손한 사고로 약관 제 0조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

# 유<u>리</u>이세요~1

차량 하차중 개문발차사고는 자동차를 용법에 맞게 사용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처리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례 6.

피보험자(미성년자)가 돌로 차량에 낚서를 하여 차량에 피해를 준 사고

# 유<u>역</u>하세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으나, 판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는 사리분별이 안되므로 고의로 보기 힘들다 하여 12세 이하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음

#### 3. 화재

## 1) 화재보험의 도난담보(명기가재) 관련

사례 7.

K씨는 화재 및 도난을 보상받고자 보험가입을 하였으나 추후 귀금속 등 귀중품은 명기가재로 등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내용을 알고 불만 제기

# #**alghal**®~i

명기가재란 한점당 300만원 이상 고가의 가재로 보험가입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화재보험의 화재의 정의 관련

사례 8.

사용하는 얼풍기(전얼기)에 의해 피보험자의 소파 열변형이 발생한 사례로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재의 정의에 대한 분정(피보험자는 본건 열변형이 화재라고 주장함)





12 11 10 11 12 E T CO11 W 11 11 11 E C OC 11 11 11 10 11 1 E C OT